

보복금지지침

당사(디와이덕양㈜)는 협력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협력사에 대하여 거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협력사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 또는 거래하는 제품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지 않는 "보복금지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의 임직원이 독단적으로 협력사에 보복조치를 행하였을 경우, 관련 임직원은 당사 내부의 징계 절차에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 당사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음을 기관 등에 신고
- 당사와의 거래 관련 분쟁조정 협의 및 조정신청
- 당사와의 계약내용에 대한 이의제기
- 당사가 운영하는 건의함 등을 통한 공정거래 관련 문제의 제기

디와이덕양(주)

2025년 04월 01일